

경기도 공고 제2026-502호

GTP공고 2026-제30호

「2026년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」 친환경차 진입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친환경차 진입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경기도 내
중소·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6일

경기도지사

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「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」 친환경차 진입 사업화 지원
- 사업목적 : 친환경차 부품개발을 통한 사업 전환·다각화 또는 친환경차 관련
신기술 보유 기업의 친환경차 시장 진입 촉진 도모
- 지원대상 :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·중견기업
 -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(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에 명시된 소재지에 따름)
 - 친환경차 부품 개발 또는 친환경차 시장 진입 중인 기업
- 지원내용 : 친환경차 관련 부품·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
 - 시제품 제작, 설계·해석지원, 시험·평가, 국내·외 인증취득 등 사업화 지원

지원기업 수	지원기간	사업비		
		지원금	기업부담금	비고
7개사	협약일 ~ 2026. 11. 30.	최대 4천만원	총 사업비의 20% 이상(전액 현금)	예시) 총사업비 5천만원 = 지원금 4천만원 + 기업 부담금 1천만원

- 접수기간 : 2026. 2. 26. (목) ~ 2026. 3. 18. (수) 18:00 까지
- 지원대상 제외사항 (해당 시 지원불가)
 - 공고일 현재 유사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
 - 공고일 현재 휴·폐업 상태의 기업
 - 지원금에 대한 100% 보증을 확약하는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기업
 - 과거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은 필히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선정되어도 보험증권 미제출시에서는 결격사유로 지원제외 됨
 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기타 정상적인 지원사업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 - 선정 이후 지원제외 사항 사후 적발 시 사업취소, 지원금 반환

2

지원절차

구분	내용	주체
공고 및 신청접수	홈페이지(pms.gtp.or.kr) 공고 및 신청서 접수	기업 → 경기TP
↓		
서류검토	법위반 사실(부존재) 확약서 접수 및 위반 여부 확인 신청서 등 서류검토	경기도 경기TP
↓		
발표평가	발표평가	경기TP
↓		
선정안내, 협약 및 지원금 지급	선정 통보, 과제 협약 및 지원금 지급	경기TP → 기업
↓		
중간점검	과제 진행사항 및 사업비 집행 현황 파악	경기TP → 기업
↓		
결과평가 및 정산	과제 수행 결과 평가 및 정산 실시	경기TP → 기업

3

선정방법

□ 선정 요건

- 발표평가 시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

□ 평가지표

구분	항목	배점
적합성 (15점)	기업 현황(매출액, 부채비율, 직원수, 조직, 개발역량 등)	5
	사업목표의 명확성·적정성	5
	개발추진 제품과 신청기업 간의 적합성	5
지원 필요성 (30점)	개발추진 제품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	10
	미래차 전환 추진을 위한 보유역량·혁신의지	10
	해당 제품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	10
지원 타당성 (35점)	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·구체성	15
	개발추진 제품의 수요 및 전후방 파급효과	10
	사업비 구성의 적정성	10
기대효과 (20점)	개발제품의 시장진출, 수요처(국내/외) 확보 가능성	10
	지원 이후 기업의 성장 가능성(고용·매출증대 등)	5
	사업지원 결과물의 활용방안 가능성	5
총계 (100점)		
가점* (최대 7점)	전문가 컨소시엄 구성 : 개발품 관련 전문가 참여시	2
	우수기업 인센티브 : '25년 참여 기업 중 과제결과 “우수” 평가기업	2
	교육참여 인센티브 : '25년 친환경차 부품개발 인력양성 교육 참여기업	2
	구매처 확보 인센티브 : 과제 결과물에 대한 구매처 확보기업	3
	사업연계 인센티브 : 지역특화프로젝트 경기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차 부분 선정기업	2
감점	「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범 위반기업지원 제한 기준」에 따른 범위반 조회 대상 11개 법률 관련 과징금,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력 확인기업(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)	20% 감점

* 가점

- ① 컨소시엄 구성 : 기업 외부의 전문가가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해당 인력은 대학, 출연연, 정부 산하기관 소속 전문가로 한정(재직증명서 제출)
- ② 우수기업 : 「'25년 친환경차 사업화 지원」 참여기업 중 결과평가 결과 “우수” 획득 기업
- ③ 교육참여 : 「'25년 친환경차 부품개발 인력양성 교육」 참여 교육생이 소속된 기업으로 다음 서류 제출 필요 (수료증과 재직증명서 등)
- ④ 구매처 확보 : 과제 결과물에 대한 구매처(상장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)로 확보한 기업 대상이며 발주 또는 계약 금액, 수량, 납기기한 등이 기재되고 날인이 된 서류 제출 필요(양해각서, 구매주문서, 기업추천서 등)

- 범위반 조회 대상 11개 법률 관련 과징금,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력 확인
 - 신청기업은 범위반 이력 반드시 확인 후, 제1호(붙임6) 서식 ‘범위반사실(부존재)여부 약서’ 제출 할 것을 추천)
 -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「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범 위반기업지원 제한 기준」에 적용되는 범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 부과, 고소 고발 사실확인

- 경기도 범위반 조회 분야(시행근거 : 경기도 범 위반기업에 대한 조례)
 - 1) (공정)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
 - 2) (노동)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
 - 3)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
 - 4) (납세)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
-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분야 범위반 사실 확인 및 범위반 사실 발견 시, 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-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객관적 소명자료와 함께 제1호(붙임7)서식 ‘이의 및 구제 신청서’ 제출 할 것. 해당 안건은 전문가 평가위원회 상정
- ※ 선정 이후 지원제외 사항 사후 적발 시 사업취소, 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4

신청접수 및 문의처

□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

연번	제출서류	작성방법
1	신청서 및 계획서	- [서식 1-1호] 신청서 - [서식 1-2호] 신청기업 현황 - [서식 1-3호] 사업계획서
2	정보제공/조회 동의 서류 및 서약서	- (붙임1) 참여확약서 - (붙임2) 개인/기업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- (붙임3)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- (붙임4) 청렴서약서 - (붙임5)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- (붙임6) 기업의 범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 - (붙임7) 이의 및 구제 신청서(해당시)
3	'25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	- '25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- 발행 전 일 경우, '24년도분 제출
4	사업자등록증 사본	- 업종/업태에 “제조”가 포함 되어야 함 - 면세사업자는 불인정
5	법인등기부등본	-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첨부
6	전월(前月)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	-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발급
7	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	-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첨부 (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
8	가점	
	전문가 컨소시엄 구성기업	- 참여 전문가 재직증명서 등(발급 3개월 이내)
	우수기업 인센티브	- 사업신청서로 같음
	교육참여 인센티브	- 교육 수료증 및 재직증명서
	구매처 확보 인센티브	- 상장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과의 구매 관련 서류(금액, 수량, 납기일 등 표시 및 날인 필요) - 양해각서(MOU), 구매주문서(PO), 구매의향서, 기업추천서 등
사업 연계 인센티브	- 사업신청서로 같음	

※ 대표자 도장 날인이 필요한 서식과 우대사항 증빙서는 PDF나 JPG파일형태로 제출 가능

※ 첨부서류는 제출시 하나의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요망

○ 접수기간 : 2025. 2. 26. (목) ~ 2025. 3. 18. (수) 18:00 까지

□ 접수처 :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(<http://pms.gtp.or.kr>)

① 경기테크노파크 검색 → 중앙부 하단 사업공고 클릭

②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→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

- 문의처 : 미래사업팀 친환경차 진입 사업화 지원 담당자
 - Tel : 031-500-3022 / E-mail : ufoksb@gtp.or.kr
- 해당 첨부서류 등을 기한 내에 신청 및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접수 완료가 되지 않음

5 유의사항 및 추가 안내사항

- 신청관련 유의사항
 - 신청기업은 「2026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사업화 지원」 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함
 - 제출 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(발급일자 및 각종 인증서류 효력 유효 기간 내),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
 - 제출서류 검토 시 일부 미비한 사항 발생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 - 보완요청 기간 내 최종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평가 탈락 처리될 수 있음
 - * 보완요청의 경우 일부 미비한 필수 제출서류에 한함
 - ** 가점 서류 누락 및 미제출의 경우 별도로 보완 요청하지 않으며, 접수기간 이후 제출한 건은 불인정
- 선정 이후 유의사항
 - 기업정보의 주요 변경사항(회사명, 주소, 담당자 등)은 즉시 통보하여야 함
 - 지원성과 및 만족도 조사, 중간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
 - 기업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시 사무편람에 따라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함
 - 사무편람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제재 및 환수 가능
- 협약 해지 사항
 - 상기 공고 내용 중 ‘지원대상 제외사항’ 에 해당하는 기업
 - 협약 이후 상기 공고 내용 중 ‘지원대상 제외사항’ 사유 발생 시 협약 해지
 - 협약 이후 경기도 범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조례에 따른 범위반 사항 발생 시, 해당 조례 내 절차에 따라 사업 취소 여부 결정

경기도 고시 제2026-8호

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

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1. 8.

경 기 도 지 사

1. 추진목적 :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2. 적용대상 :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
- (도내 기업)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, 영업소,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
3. 적용사업 :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,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
가.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
나. 사업유형별 적용제외 · 유예사업
 - 1) (계도·개선사업)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
 - 2) (사업운영비·소액사업)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, 소액·다수기업 지원사업
 - 3) (비경쟁사업)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
 - 4) (자금·용자지원 사업)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
 - 5) (시·군 매칭(보조) 사업)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
 - 6) (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)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
 - 7) (투자유치 지원)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(인센티브) 사업
4. 위반사실 적용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가. 적용법률
 - 1) (공정)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
 - 2) (노동)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
 - 3) (환경)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
 - 4) (납세) ❿ 국제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
 나. 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(붙임 1)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
다.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·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·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
5.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
가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
나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

6. 사업참여 제한조건 : 법 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
가.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협약서(서식2)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나.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(서식4)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% 감점 미적용

- 단,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,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다.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(사업별)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
7. 법위반사실 확인 :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

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

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

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도·시군 조회

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

8. 이의 및 구제신청 :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(서식3) 제출

-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

※ 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

9.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1), 기업의 법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협약서(서식2)

10. 고시 효력일 : 고시일 ~ 차기 고시일 전까지

11. 문의처 :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(☎ 031-8030-2992)

붙임 1. (유예대상 목록) 47개 법위반 행위목록

2. (서식1)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3. (서식2)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협약서

4. (서식3) 이의 및 구제신청서

5. (서식4) 기업의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